

월 마감, 반기 중간 점검, 결산 전 보고까지 한 계약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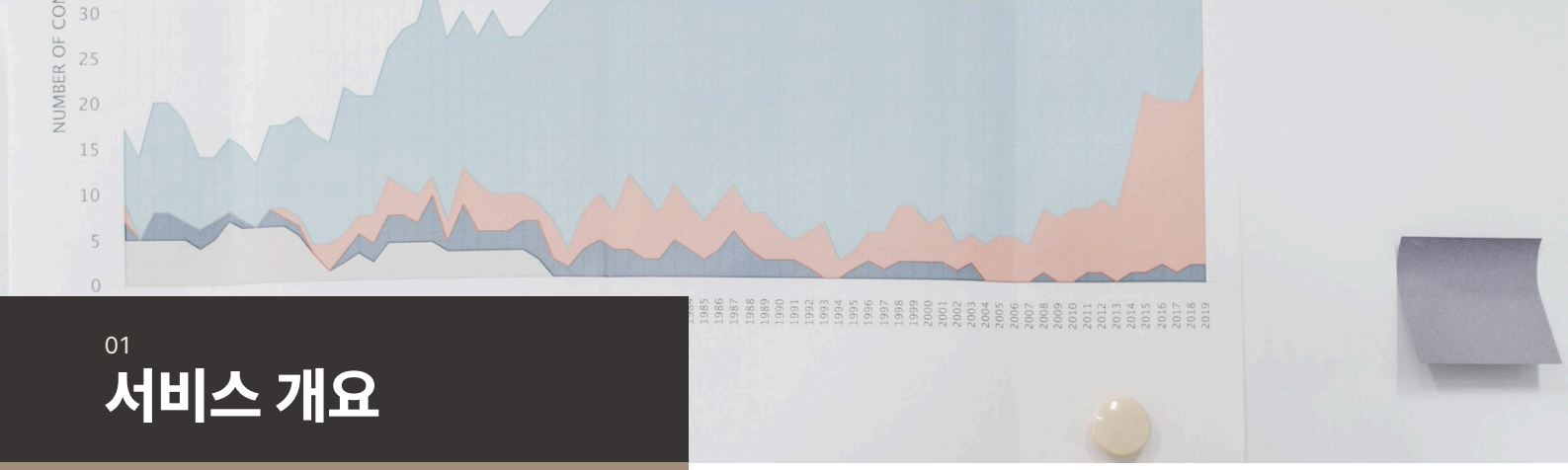
회계법인 리파인드

기장대리 제안서

작성일 2026. 11. 18.

REFINED
회계법인 리파인드

T. 02-516-3830 | E. admin@refinedacc.com | W. refinedacc.com



01

서비스 개요

기장을 맡기거나 옮기기 전에 확인할 조건

검토 결론

법인은 복식부기가 의무이고(법인세법 §112), 어기면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가산세입니다(§75의3).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을 확정할 때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이 됩니다(법인세법 §23①, §33①). 그래서 세액은 결산을 확정하기 전에 봅니다.

계약 전 확인 항목 4개

1
사업자 유형
법인,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2
결산월
12월 결산 여부, 일정표의 기준

3
월 거래 규모
세금계산서·카드·급여 건수

4
이관 자료
직전 세무조정계산서와 기초 잔액

이런 분께

- 법인세 낼 돈을 신고 직전에 처음 알았던 대표
- 매달 자료는 보내는데 회사 숫자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 대표
- 세무대리인을 바꾸려는 법인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며 기장 방식이 바뀌는 대표

서비스 범위와 진행 단계

1 이관·현황 진단	기존 장부와 신고 내역을 넘겨받아 기초 잔액과 그동안의 처리 방식을 확인합니다. 바로잡을 항목과 올해 법인세 예상 규모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2 월 마감	자료 제출과 마감 일정을 정해 매월 같은 시점에 마감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는 신고 전에 예상 세액을 알려드립니다.
3 반기 중간 점검	상반기 실적으로 세무조정을 반영한 예상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과 가결산 기준을 나란히 놓고 8월 31일 전에 보고합니다.
4 결산보고·신고	결산 확정 전에 재무상태·손익·예상 세액을 보고하고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을 짚습니다. 협의한 내용을 반영해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02

월 마감에서 결산까지

월 마감, 반기 점검, 결산 전 보고의 순서

기장은 매월 마감하고 그 숫자로 두 번 보고합니다. 상반기가 끝나면 중간 점검 보고서, 사업연도가 끝나면 결산 확정 전 결산보고서입니다. 아래 도해는 12월 결산 법인 기준입니다.

도해 1. 월 마감에서 법인세 신고까지(12월 결산)

월 마감
증빙·계정, 복식부기

→

부가세 사전안내
신고 기한 전 예상 세액

→

반기 중간 점검
8월 31일 중간예납 전

→

결산보고
결산 확정 전

→

법인세 신고
3월 31일까지

세액은 신고 전에 두 번 봅니다. 8월 중간 점검, 결산 확정 전 보고

기장 대행과 신고 대리는 세무사법에서 다른 호입니다. 세무사법 §2는 신고 대리(1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2호), 장부 작성 대행(3호), 상담·자문(4호)을 나눠 둡니다. 리파인드의 기장 계약에는 장부 작성 대행과 함께 신고 대리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이 들어가고 위임 범위는 계약서에 호 단위로 적습니다.

근거: 세무사법 §2, §20의2①, 법인세법 §60①, §63②③

도해 2. 결산에 넣어야 인정되는 항목과 기한

신고서 단계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항목입니다. 12월 결산 법인 기준입니다.

항목	기준과 근거	놓쳤을 때
감가상각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까지 손금 (법인세법 §23①)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그 해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은 §23③이 따로 정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금액 중 한도까지 손금 (§33①)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그 해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대손금(파산·부도 등)	파산·부도 후 6개월 경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 등은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시행령 §19의2①8호~13호, ③2호)	결산에 넣지 않으면 그 사업연도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1호~6호)은 사유가 발생한 날의 사업연도입니다
중간예납	상반기 가결산과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 선택, 8월 31일까지 (§63②③, §63의2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이 내지 않으면 직전 사업연도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63의2②1호)
법인세 신고	3개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개월.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 첨부 (§60①⑤)	첨부가 없으면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무신고는 납부세액 20%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국세기본법 §47의2)

결산월이 12월이 아니면 기한이 달라집니다. 계약 후 첫 주에 일정표로 확정합니다.



03

맡기기 전에 확인하는 항목 6개

확인하지 않고 맡기면 기한을 놓치거나 세액이 달라지는 항목

1 기장 방식 구분

법인은 모두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합니다(법인세법 §112). 개인사업자는 신규 개시 사업자와 직전 수입금액이 업종별 3억·1억5천만·7천5백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소득세법 §160, 시행령 §208⑤). 다만 의료업·수의업·약국업과 변호사업·세무사업 등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를 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70④).

근거: 소득세법 §160①③, §70④, 시행령 §208⑤·§147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②7호, 법인세법 §112

2 성실신고 대상 여부

개인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15억·7억5천만·5억원 이상이면 확인서를 내고 신고 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늦춰집니다. 사업서비스업은 5억원입니다(소득세법 §70의2, 시행령 §133①).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 등 시행령이 정한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였던 개인이 전환한 뒤 3년 이내의 법인과 그 사업을 인수한 법인이 대상이고 기한은 3개월에서 4개월입니다(법인세법 §60의2, §60①).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확인서를 내지 않을 수 있고 그때는 3개월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70의2, 시행령 §133, 법인세법 §60①, §60의2

3 세무대리 등록과 조정반

세무대리는 등록한 사람만 할 수 있고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세무사법 §20①, §20의2①1호).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이거나 외부감사 대상인 법인,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이면서 조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등 7개 유형은 조정반 소속자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법인세법 §60⑨, 시행령 §97의2①1호·2호). 개인은 시행령이 정한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상입니다(소득세법 §70⑥). 수행자의 등록과 조정반 소속을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근거: 세무사법 §20①, §20의2①, 법인세법 §60⑨, 시행령 §97의2, 소득세법 §70⑥

4 중간예납 계산 방식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상반기 가결산 기준 중 선택합니다(법인세법 §63의2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거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면 가결산 기준만 가능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이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없습니다(§63①2호).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이 8월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직전 사업연도 방식으로 계산합니다(§63의2②1호). 상반기 실적이 나빠 가결산 방식의 세액이 더 작다면 8월 31일 전에 가결산으로 납부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63①②③, §63의2①②

5 부가가치세 매입 누락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와 장부 매입을 월별로 대사합니다. 빠진 매입세액은 그 신고에서 공제되지 않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국세기본법 §45의2①). 음식점업·제조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샀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부가가치세법 §42①).

근거: 국세기본법 §45의2①, 부가가치세법 §42①

6 신고를 놓쳤을 때의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입니다.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부정행위 0.14%)와 비교해 큰 금액을 냅니다(국세기본법 §47의2①②). 수입금액 20억원인 법인이 결손으로 무신고해도 140만원입니다. 법인세법 §75의3의 장부 가산세와 겹치면 큰 금액 하나만 적용합니다(§47의2⑥).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를 감면합니다. 수정신고(과소신고분)는 1개월 이내 90%, 3개월 75%, 6개월 50%, 1년 30%, 1년 6개월 20%, 2년 10%입니다(§48②).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감면에서 제외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감면 대상에 없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47의2①②⑥, §47의4①, §48②



04

이관 순서와 연간 일정

이관, 월 마감, 중간 점검, 결산 순서입니다

도해 3. 12월 결산 법인의 연간 일정

매월 10일·말일
원천세 10일(직전 연도 상시고용 20명 이하 등 승인받은 경우 반기 말 다음 달 10일), 간이지급명세서 말일 (소득세법 §128①②, §164의3①, 시행령 §186①). 근로소득분 가산세는 2027.1.1 시행 (§81의11)

1·4·7·10월 25일
확정 1·7월, 예정 4·10월. 개인과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50% 고지 (부가가치세법 §48①③, 시행령 §90④)

2월 말·3월 10일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2월 말, 근로·퇴직·사업소득 3월 10일, 일용근로 다음 달 말일 (소득세법 §164①)

3월 31일·4월 30일
법인세 3월 31일,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각각 4월 30일, 5월 31일 (법인세법 §60①, 지방세법 §103의23①)

8월 31일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법인세법 §63②③)

도해 4. 세무대리인을 옮길 때의 순서

순서	하는 일
1 자료 이관	기존 장부와 신고 내역, 직전 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를 넘겨받습니다. 대표님은 이관 동의와 서류 몇 가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2 현황 진단	기초 잔액과 그동안의 처리 방식을 확인하고 바로잡을 항목을 문서로 드립니다.
3 월 마감 정착	자료 제출과 마감 일정을 정해 매월 같은 시점에 마감되도록 합니다.
4 반기 중간 점검	상반기 실적으로 예상 세액과 공제 요건을 정리해 8월 31일 전에 보고합니다.
5 결산보고·신고	결산 확정 전에 보고드리고 협의한 조정 사항을 반영해 신고를 마칩니다.

보수

기장료와 세무조정 보수는 요율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견적은 첫 상담에서 드립니다. 연간 결산보고서에 보수 산정 내역과 요율표가 함께 들어갑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과 담당자

문의는 대표번호로 받습니다

Q1. 기장만 맡기면 세무조정과 신고도 포함되나요?

세무사법 §2는 신고 대리(1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2호), 장부 작성 대행(3호), 상담·자문(4호)을 별개의 호로 둡니다. 리파인드의 기장 계약에는 장부 작성 대행과 함께 신고 대리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이 들어갑니다. 세무대리는 등록한 사람만 할 수 있으므로(§20①) 어느 곳에 맡기든 수행자의 등록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세무사법 §2, §20①

Q2. 회계법인에 기장을 맡겨도 되나요?

됩니다. 공인회계사법 §2는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세무대리(2호)를 넣고 있고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뒤 이 일을 합니다(세무사법 §20의2①1호). 장부 작성 대행은 세무사법 §2 3호의 세무대리입니다.

공인회계사법 §2, 세무사법 §2, §20의2①

Q3. 외부감사 대상이 되면 기장은 누가 맡나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또는 매출 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 120억원·부채 70억원·매출 100억원·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이면 대상입니다(외부감사법 §4①3호, 시행령 §5①). 감사 계약 기간 중 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는 그 회사의 회계기록·재무제표 작성을 할 수 없습니다(공인회계사법 §21②1호). 그래서 감사는 다른 감사인이 맡고 결산 준비는 기장하던 곳이 이어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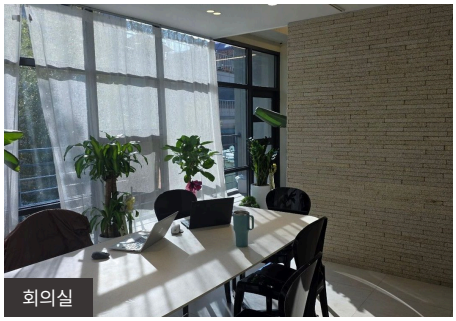
외부감사법 §4①, 시행령 §5①, 공인회계사법 §21②

담당 회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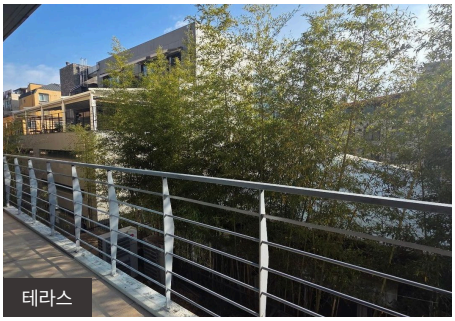
이름	직위	전문 분야
이종헌	대표 회계사	가업승계·상속증여, 법인 구조 설계, 세무조사 대응, 기업가치평가
임연희	부대표 회계사	법인 조세 업무, 중소·중견기업 세무 자문
이현우	파트너 회계사	세무조정, 세무조사 대응, 경정청구, 세무진단
장하리	이사 회계사	세무조정, 세무자문, 개인 재산제세 업무
김윤경	이사 회계사	K-IFRS·US-GAAP 감사, 투자회계, 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 검토
박광종	세무사 고문(세무법인 엑스퍼트 소속)	국세청 약 40년 근무, 조사·징세·부가가치세 업무



대기 라운지



회의실



테라스

T. 02-516-3830 | F. 0507-1790-1496 | E. admin@refinedacc.com | W. www.Refinedacc.com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40길 18(크레아빌딩) · 지하철 신사역·논현역에서 각각 도보 5분

상담 내용은 공인회계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세율·기한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